

제 853 호
1981. 8. 1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편집 : 문화공보관 김 진 호
전화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령	
제 1530 호 :	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3
제 1531 호 :	서울특별시묘지및장례장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4
◎ 규 칙	
제 242 호 (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) :	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기사제 도입심의위원회규칙 폐지규칙 4
◎ 고 시	
제 303 호 :	연탄의최고가격지정 5
제 304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및지적승인 5
제 306 호 :	육류연동가격고시 6
◎ 공 고	
제 216 호 :	주택개량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6
◎ 사 명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741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
1981년 8월 14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530 호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사용료
징수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 사용료
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3 조중 "시장"을 "서울특별시장

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로 하고,
제 3 조 내지 제 7 조를 제 4 조 내지
제 8 조로 하고,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제 3 조 (사용료 면제) 기술교도 수강
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
게는 수강료, 수탁료, 숙박료 및
식대를 면제한다.

1. 생활보호 대상자

2. 원호대상자

3.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및 불량
소년, 소녀
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자

"발표"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"발표"

시 설 사 용 료

종 별	단 위	시작요금	위 탁 경 영 요 금
숙박	1인 1박	120 원	시중 최저 요금의 1/3 범위내
식사 (백반)	1인 1식	120 "	" 1/2 "
복무	대인 1인 1회	150 "	" 1/2 "
	소인	- "	
이발	조발	100 "	" 1/3 "
	삭발	- "	
미용	고대	- "	" 1/2 "
	파마	- "	
탁 아 료	1인 1월	2,000 "	-
기술교육수강	"	3,000 "	-
예 직 장	1회	-	" 1/3 "
(부대시설)	()	-	

주) 1. 식사중 분식 및 기타 식단은 대당요금의 70%이내에서 시장이 따로정함

2. 위탁경영시설 사용료 책정기준은 지역별, 이용자수등의 재반여건을 고려
상가 수준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조례 제 1531 호
 서울시 묘지 및 장제장 사용료 징수 서울특별시묘지및장제장 사용료
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징수조례중개정조례
 한다.

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 사용료
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부 칙

1981년 8월 17일 이 조례는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"별표"

구 분	내 용	요 금
1. 묘 지 사용료	○ 일반묘지 : 1명당 (3.3 ㎡)	2,000 원
	○ 공원묘지 : 반봉분형 1기당 (8.25 ㎡)	40,000 원
2. 공원묘지 관 리 비	○ 반봉분형 1기당	10,000 원
3. 장제장 사용료	○ 대인 (만 13세 이상)	8,000 원
	○ 소인 (만 12세 이하)	4,000 원
	○ 사 산 아	1,000 원
	○ 유골개장	2,000 원
	○ 적출물 1건당 (10kg 한)	3,000 원
	○ 납골 (2년 한)	2,000 원

◎ 교육규칙 제 242 호

규 칙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기자재도입
 심의위원회규칙폐지규칙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 도
 입 심의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 229 호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기자재 도입 심의

1981년 8월 13일 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부 칙 (81.8.13)

교육감 이 창 갑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03 호

연탄의최고가격지정

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

다

음

1. 연탄의 최고 가격

탄 중	최 고 가 격		비 고
	판매소도	가 정 도	
3.6 kg 연탄	141.00	153.00	탄 판매소판매가격은 145.50
4.8 kg "	187.00	201.00	" 191.50
7.5 kg "	281.50	302.00	" 286.50

2. 기간 : 고시한 날로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

부 칙

1. 이 고시는 1981.8.1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1 호 (81.4.20) 는 폐지한다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04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
및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
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

물 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
에 따른 동력자원부 고시제 81-202 호
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역 연탄의
판매소도와 가정도의 최고 가격을
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한다.

1981년 8월 14일

서울특별시장

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와 건설부
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
위임 사항과 도시계획 변경 통제
규정 제 3 조 5 호 및 제 4 조 1 호의
단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
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되
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
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
자 및 이해관 제인에게 보인다.

1981. 8. 14

서울특별시장

제 853 호

시

보

1981.8.18

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서

분	등급	류별	번호	목원	연 장	사 점	종 점	비 고
기정	대토	1	40	35 m	3,820 m	적 선 동 (3호광장)	새브란스 병원앞 (광로 40)	
변경	"	1	40	35 m	3,820 m	"	"	사직터널 상부 190 m 구간변경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

서울특별시고시제 306 호

육류연동가격 고시

육류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농수
산부 훈령 제 453 호에 의거 서울특
별시의 육류연동 가격을 다음과 같
이 고시 한다.

1981. 8. 14

서울특별시장

1. 육류 연동 가격

돼지고기 (정육 600 g 당) 2,150 원

2. 시행일 : 1981.8.16일부터

공 고

○ 서울특별시공고제 216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
위한공람공고

. 건설부 고시 제470호 (73.12.1) 및

동 고시 제 55 호 (81.2.20) 로 주
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결정
되어 서울시 고시 제 262 호 (81.7.10)
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된
역촌 구역의 4 개구역의 실시계획
인가를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
규정에 의거 동 실시계획인가 내
용을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토지
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
보인다.

2. 동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공람하
실후 귀하의 의견을 공람기간내에
관할구청에 서면으로 제출 하실수
있습니다.

3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건축국 재
개발 2 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
비치하고 공람하고 있습니다.

1981. 8. 17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공 고 내 용

가. 사업의 명칭 : 주택개량 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면적

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역촌구역	은명구 역촌동 산 32-4 번지일대	36,364	
홍제 13 "	서대문구 홍제동 273 "	20,220	
월계 2 "	도봉구 월계동 산 21 "	8,241	
상계 6 "	도봉구 상계동 72 "	239,710	
남가좌 3 "	서대문구 남가좌동 105 "	47,710	
5 개 구 역		351,535	

다. 시행자 : 서울특별시

라. 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86.12.30

마. 설계도서 및 조서 : 별첨 (생략)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

건물 조서 : 별첨 (생략)

사 령

◎ 1981. 8.14

령 290 호

성동구시뮬봉사실 윤 순 화
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
제 2 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

령 291 호

부지과장 김 동 일
서 기 관

을지연습 81 통제단요원 파견근무를 해제함

◎ 1981. 8.18

령 292 호

관악구저무과 이 상 립
지방행정서기

비상계획관 근무를 명함

령 294 호

윤 수 1 과 김 재 중
지방행정사무관
주택행정과 주택행정제장에 포함
서울특별시